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25호
- 나. 발 의 자 : 임만균 의원(찬성의원 9명)
- 다. 발의일자 : 2019년 8월 6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2015년 7월 1일, 구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되어 모성 보호의 개념이 모·부성권 보장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음.
- 이에 개념 전환의 취지와 문언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상의 “모성 권리 보호” 또는 “모성 보호”라는

문언을 “모성권 보장” 또는 “모성 보장”으로 수정하는 등 모성 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변경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개정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된 상황에 맞춰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상의 “모성(권리) 보호” 용어를 “모성(권) 보장”으로 일괄정비 하는 것임.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되었음 (2015.7.1.).
-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은 종전 법률상의 “모성 보호” 개념을 “모·부성의 권리보장”으로 전환하고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¹⁾.

1)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전후 비교 〉

|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
|--|---|
| 제18조(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u>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妊期) 여성과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u>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

- 이에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춰 서울시 조례상의 모성보호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즉시 현행화하는 바람직한 입법추진으로 볼 수 있음.

〈 일괄정비 조례안의 주요 내용 〉

| 연번 | 조 례 명 | 조 항 | 개 정 내 용 |
|----|---------------------------------|---------------|----------------------|
| 1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 제24조제4항 | 모성보호 ⇒ 모성권 보장 |
| 2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 제1조 | 모성보호와 ⇒ 모성권 보장과 |
| | | 제4조 | 모성 보호를 받을 ⇒ 모성을 보장받을 |
| 3 |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3조제2항 | 모성보호 ⇒ 모성권 보장 |
| | | 제5조제2항 제4호 | 모성보호 ⇒ 모성권 보장 |

- 다만 안 제2조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중 제24조제4항의 “모성보호시간”을 “모성권 보장 시간”으로 정비하는 경우,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²⁾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안 제4조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3)의 개정사항은 양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도 이와 관련해 ‘모·부성권 보장’으로 표기하고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 의견 〉

| 일괄정비안 | 수정의견 |
|--|--|
| <p>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관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u>모성권 보장</u>”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제4조 중 “모성보호”를 “<u>모성권 보장</u>”으로 한다.</p> | <p>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관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u>모·부성권 보장</u>”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제4조 중 “모성보호”를 “<u>모성권 보장</u>”으로 한다.</p> |

| 담당 조사관 | 연락처 |
|--------|--------------|
| 최 범 준 | 02-2180-8058 |

3)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